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5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2월 25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시에서 조성·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현 상황에 맞지 않아 삭제함.

2. 주요 골자

- “민간위탁 관련 조항” 삭제(안 제24조의2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4조의2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임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 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〈신설〉	제24조의2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임 또는 위탁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제24조의2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임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”를 “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3조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7조제3항”을 “시행규칙 제27조제3항”으로, “정상적”을 “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”를 “시행규칙 제11조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”을 “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”을 “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6호 중 “긴급복지지원법 제2조”를 “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임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

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“반려동물”이란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</u>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	6. ----- ----- <u>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</u> (이하 “ <u>시행규칙</u> ”이라 한다) 제3조에서 ----- -----.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“사육포기 동물”이란 <u>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</u> (이하 “ <u>시행규칙</u> ”이라 한다)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<u>정상적으로</u>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.	8. ----- <u>시행규칙 제27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<u>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</u> ----- -----.
9. ~ 16. (생 략)	9. ~ 16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) ①·② (생 략)	제7조(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.
1.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</u>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	1. <u>시행규칙 제11조에서</u> ----- ----- -----.

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

2. 등록대상동물의 이름, 소유자의 연락처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

3. (생략)

제7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8조(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)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동물 인수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

7. (생략)

② (생략)

2. -----
----- 시행규칙 제12조에
따른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-----

----- 시행규칙 제12조의
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-----

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〈신 설〉

제24조의2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위
임)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설치
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
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
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
등을 지원할 수 있다.